

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7) 상정

○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조재형)

가. 제안이유

○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(2009.9. 21.) 및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21755호, 2009. 9. 29. 공포·2010. 1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“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”란을 삭제함.

(안 별표 1의 제1호다목1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	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 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

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 제1호다목1)을 삭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0년 1월 1일부터
적용한다.

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

의안 번호	제517호
의결 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(2009.9. 21.) 및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1755호, 2009. 9. 29. 공포·2010. 1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“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”란을 삭제함.(안 별표 1의 제1호다목1)

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

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제1호다목1)을 삭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<u>제증명등의 수수료표</u> (제3조 관련)				<u>제증명등의 수수료표</u> (제3조 관련)			
구 분	기준	금액	비고	구 분	기준	금액	비고
1. 증명 가.·나. (생 략) 다.지방세에 관한 증명서 1)지방세 납세증 <u>명서</u> 2) (생 략)	1통	800	전국통일	1. ---- 가.·나.(현행과 같 음) 다.----- ----- 1) <삭 제> 2) (현행과 같음)			